

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구(해당국장)
2. 마포경찰서

3. 217연대
4. 마포소방서
5. 서부수도사업소
6.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원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6조(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①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재해대책 본 부장과 차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재해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한 4급 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해당국장) 2. 마포경찰서 3. 217연대 4. 서부교육구청 5. 신촌 원효·아현전화국 6. 마포소방서 7. 한국전력공사 서부지점 8. 서부수도사업소 9. 서울도시가스 10.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p>제6조(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①</p> <p>.....</p> <p>.....</p> <p>.....</p> <p>②</p> <p>.....</p> <p>.....</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4 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해당국장) 2. 마포경찰서 3. 217연대 4. 마포소방서 5. 서부수도사업소 6.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8
----------	-----

제안년월일 : 1997.02.
제안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1996.12.6 법률 제4993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조례 내용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함.(안 제2조)

3. 개정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1996.12.6 법률 제4993호) 제41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여부 : 없음
 첨부 1.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

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
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

대책법 제4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도시 계획법규정의 도시계획사업,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풍수해대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 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 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제2조(정의)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
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7. 2. 22.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2. 14. 마포
구청장

나. 회부일자 : '97. 2. 14

다. 상정일자 : 제44회 임시회 제4차위원회('97.2.22)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유병현 주택
과장)

가. 제안이유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1996.12. 6
법률 제4993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
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조례 내용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
법으로 개정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진재 전문위원)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풍수해대책법의 자연재해대책법(1996.
12. 6 법률 제4993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
으로 특이 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없음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169	제안년월일 : 1997. 2. 제안자 : 마포구청장
----------	-----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13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을 규정함(안 제
3조)

나.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기금운용심의회설치를 규정함(안 제6조)

3. 관계법령

-도로법(1995. 12. 6. 법률 제5025호)

-지방자치법(1995. 12. 29 법률 제5069
호) 제133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 필요없음.

별첨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